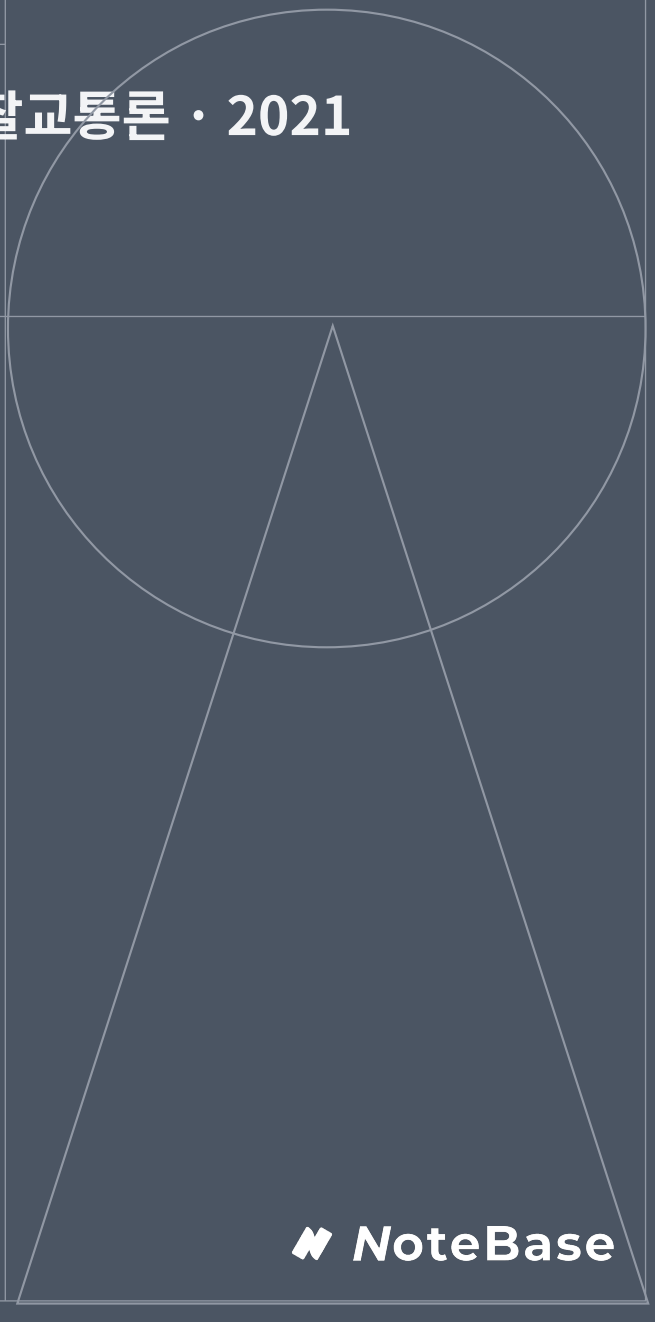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1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1

문 1. 경찰공무원(교통경찰)의 활동과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실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③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④ 운행중인 정비 불량차량 발견 시 정지 및 차량 점검요구

정답 2번

①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는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 설치 · 관리

NoteBase

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장등**이 지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2.16, 2018.4.24, 2024.7.23>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4.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③

통행 허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등 **교통 관련 허가·신고 처리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NoteBase

④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운행 중인 차를 정지시키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용어 정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④ 「도로교통법」상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정답 1번

①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하도록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도로이다. 자전거만 통행하는 도로로 한정하지 않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6.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②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③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며, **구동·조향·제동장치와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크기와 구조**에 적합한 차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④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NoteBase

문 3.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는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된다.
㉡ 노면표시 중 노면색깔유도선표시는 노란색이다.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등에 설치한다.
㉣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적색으로, 문자부분은 백색으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말하며, **노면표시도 안전표지의 한 종류**이다.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 규제 ·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NoteBase

㉡

노면색깔유도선표시는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으로 표시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비·안개·눈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등에 설치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1.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
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1) 설치기준

비·안개·눈 등 거친 날씨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혼잡이 잦은 곳,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에 설치한다.

NoteBase

㉡

일방통행표지는 **기호부분을 청색 바탕에 백색 기호**로, **문자부분을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1.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
가.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그림에 의한 것 외에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2) 지시표지 중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청색바탕에 백색기호로, 문자부분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다.

NoteBase

문 4.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속도 규정 및 벌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시부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② 도시부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라도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70킬로미터 이내

③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④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 노선이나 구간에서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②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이나 구간의 최고속도는 **시속 70킬로미터가 아니라 60킬로미터 이내**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NoteBase

③

정해진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 2020.6.9>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④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 최고속도의 50%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표지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 · 안개 ·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 · 도경찰청장이 별표 6 1. 제1호 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 · 폭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NoteBase

문 5.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④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번

①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할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할 수 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 곳은 **횡단보도**이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NoteBase

③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때 정지한 차의 승하차자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NoteBase

문 6. 차량 신호등 및 신호에 따른 주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횡형 사색등화 신호등은 좌로부터 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색의 순서로 배열한다.

② 사각형 등화의 녹색화살표 등화(하향)시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황색 등화시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정지하여야 한다.

④ 적색 등화 점멸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가로형 사색등화의 기본 배열은 **왼쪽부터 적색 → 황색 → 녹색화살표 → 녹색**이다. 적색등화 아래에 녹색화살표를 따로 배치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kjnmnQdxKNJdE7lQZuQklNJyi3MkqHW/view?usp=drivesdk

②

사각형 등화의 하향 녹색화살표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aa4yfJLvSdNze49Mk5k5kFI1OScDzTex/view?usp=drivesdk

③

황색 등화로 바뀌었을 때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하였다면 **정지하지 않고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HGR9IKBXGt70DgWhnjM0TA2ovqm0n0DF/view?usp=drivesdk

④

적색 등화가 점멸하면 정지선·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9Po5XwtNOhqSqa4KdMwNUg0VpapVdW_b/view?usp=drivesdk

NoteBase

문 7. 「도로교통법」상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은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알리는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되 그 알림판에 대해 특별한 형식이나 규격은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의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면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고,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 · 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②

경찰서장은 도로의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면 **먼저 통행을 금지·제한한 후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상·구간·기간을 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NoteBase

③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제한하려는 지점 또는 바로 앞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되, **법령에서 정한 형식과 규격을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제10조제1항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1. 14.> 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제10조제1항 관련)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 도경찰청장이 통행금지(제한) 시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제한) 시 비고 도로의 폭 및 교통여건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표시판의 크기를 2∼4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 파손·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차마·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NoteBase

문 8. 도로교통법령상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사시행자는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로봇 신호수를 배치하되, 안전요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며,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상·하로 움직여 신호하도록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4번

①

공사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사 일시·구간·기간·시행방법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해야 하면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한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할 필요가 있으면, 공사시행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로봇 신호수는 **안전요원 배치가 어려운 경우** 배치하며, 안전요원과 같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신호는 **깃발을 상·하로 움직여** 하되, 야간에는 신호봉을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제42조의2 관련)
가. 로봇 신호수 : 안전요원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배치하되, 안전요원과 같은 복 장을 착용하도록 하며,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상 · 하로 움직여 신호하도록 한다.

④

공사로 훼손한 교통안전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선지의 7일과 시·도경찰청장은 모두 잘못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4.21>

NoteBase

문 9. 다음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도로의 점용허가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 경찰청장, ㉡: 관할경찰서장, ㉢: 1년

② ㉠: 관할경찰서장, ㉡: 시·도경찰청장, ㉢: 1년

③ ㉠: 시·도경찰청장, ㉡: 관할경찰서장, ㉢: 6개월

④ ㉠: 경찰청장, ㉡: 관할경찰서장, ㉢: 6개월

정답 1번

㉠,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등의 행위를 하면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에게, 그 외 도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관리청은 **허가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허가 목적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oteBase

문 10. 「도로법」 상에 명시된 도로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②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③ 광로, 대로, 중로, 소로

④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정답 4번

②

법정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이다.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 등으로 나누는 선지의 분류와 다르다.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④

법정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이다.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NoteBase

문 1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에 대한 사항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및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는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다.

③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이다.

④ 다리 위에 주차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답 2번

①

경찰공무원과 시장등(도지사 포함)이 법정 절차에 따라 임명한 공무원은 위법하게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 ·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 · 군공무원"이라 한다)

NoteBase

②

주·정차위반 단속은 경찰공무원과 법정 요건에 따라 임명된 시·군공무원이 담당하며, **모범운전자에게는 단속권한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 ·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 · 군공무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 · 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 · 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 · 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NoteBase

④

다리 위는 **주차금지 장소**이며, 그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의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2022.1.11, 2024.3.19, 2024.12.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 · 제3항 · 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 · 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NoteBase

문 12.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4번

㉠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으면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주차 수요와 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4.20>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신호기 ·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NoteBase

ㄴ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4.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ㄷ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teBase

㉣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어린이 · 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4.20>

NoteBase

문 13. 「도로교통법」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하고, 원상회복한 경우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④ 공사시행자가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정답 2번

①

공사시행자가 공사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하면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⑥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상대방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NoteBase

④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의 공사를 하려는 공사시행자는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한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4. 교통사고처리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감속하고 반대차로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로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는 등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정답 3번

①

야간에 불을 켜지 않은 자전거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 뒤에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무단횡단까지 미리 예상하여 감속하고 반대차로를 살피며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야간도로 사정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 탓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력과 예상될 수 있는 자전거의 속력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돌은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며 더우기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또한 피고인이 경찰이래 제 1 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같이 진술한 소론 진술부분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95 판결)

NoteBase

②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의무는 **보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진입 선후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먼저 진입한 차량이 계속 진행해도 횡단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 위험도 없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③

교통섬 오른쪽에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직진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는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에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NoteBase

④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외부차량의 출입·주차를 통제하지 않는 등 관리·이용 상황상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공개된 공공성 있는 장소**이므로, 해당 아파트단지 통행로는 도로에 해당한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비록 위 아파트단지는 출입구 1곳 외에는 경계 부분에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 쪽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위 출입구에는 경비초소가 없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경비원들도 출입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하여 401동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낚시를 다녀왔고, 인근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음에도,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는 10개 동 846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넓은 아파트단지이나, 경비원 6명, 청소원 4명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주차관리인 등은 없으며,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NoteBase

문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보호구역 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② 교통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③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④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정답 1번

①

어린이보호구역 밖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 어린이 치상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NoteBase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기 후 도주치사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오토바이도 위험운전치상죄의 대상인 자동차등에 포함된다.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④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 자체**가 가중처벌 대상이며,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NoteBase

문 16. 「교통사고조사규칙」상 교통사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 하거나 1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명백할 경우 신속히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및 보존 조치를 취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되, 사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가 3대 이상인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한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수 건(數 件)으로 처리한다.

④ 교통사고의 유형은 차대차 사고, 차대사람 사고, 차량단독 사고, 건널목 사고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정답 1번

①

대형사고는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사망을 말하므로, 선지의 15일과 15명은 잘못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사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보존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로 옮긴다. 이때 **사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5조(사상자 구호)
② 교통사고 현장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및 보존 조치를 취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되, 사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NoteBase

③

관련 차량이 3대 이상이어도 **하나의 원인행위로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한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여러 건으로 처리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의2(교통사고의 수)
②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가 3대 이상인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시간 · 장소적으로 밀접한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수 건(數 件)으로 처리한다.

④

교통사고의 유형은 **차대차 사고, 차대사람 사고, 차량단독 사고, 건널목 사고**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의3(사고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차대차 사고 : 차와 다른 차가 충돌 · 추돌 또는 접촉한 사고 2. 차대사람 사고 :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3. 차량단독 사고 :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연물이 원인이 되어 차가 스스로
전도 · 전복 · 추락 · 충격한 사고(차량단독 사고 후 그 충격 등으로 다른 차 또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차량단독 사고로 처리) 4. 건널목 사고 : 철길건널목에서 차와 기차가 충돌한 사고

NoteBase

문 17. 교통사고의 용어 및 조사와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② 스키드마크(Skid mark)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③ 현장도면 작성시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이동지점을 점선으로,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 피해상황, 운전자의 과실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전도는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닿은 상태이고, **전복은 차가 뒤집혀 넘어진 상태**이다. 선지는 전복의 정의를 전도로 잘못 설명하였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좌측면이 지면에 접해 있으면 좌전도, 우측면이 지면에 접해 있으면 우전도)를 말한다. 12. "전복"이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②

스키드마크는 급제동으로 **타이어의 회전이 멈춘 상태에서 노면을 미끄러져 생기는 마모·활주 흔적**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스키드마크(Skid mark)"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③

현장도면은 **사고발생 지점을 중앙에 두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을 위쪽**으로 하여 작성한다. 차량의 **이동지점은 점선,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구별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4조(현장도면 작성)
⑦ 교통사고의 발생지점과 사고차량의 정차지점을 표시하는 때에는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이동지점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NoteBase

④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은 교통사고의 **피해 상황과 운전자의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사항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는 과실 유무 등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NoteBase

문 18.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피 뺑소니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인피사고의 운전자는 음주의 양,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

③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 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구호조치나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둔 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사고가 아니다.

④ 교통조사관은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2주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정답 3번

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teBase

②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한다. 그 상태는 **주취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운전자 행태와 운전조작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수치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발생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알콜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주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운전조작이 곤란한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콜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NoteBase

③

피해자의 사상을 알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 도주에 해당한다. **차량을 현장에 남겨둔 사실만으로 도주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함에 있어서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바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는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후에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추돌을 당한 사실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이 사건 사고의 야기자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이 당한 종전의 추돌 사고를 우연히 목격한 바 있었던 피해자 공소외 1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인이 말하는 사고는 이 사건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야기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이미 출동한 119대원과 경찰은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 후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고인의 지갑,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여(그것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④

교통조사관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2주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⑦ 교통조사관은 부상사고로써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2주간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교통단속 및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②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3번

①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에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포함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HiH9hFn9w_oolXHZMY7ouCjW5BymJ4r/view?usp=drivesdk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 2023.10.24, 2024.2.13, 2024.3.19, 2024.12.3, 2025.4.1>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NoteBase

③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④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NoteBase

문 20.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차금지 장소 지정 및 신호기 폐지 사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답 4번

①

경찰관서장은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⑥ 시 · 도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 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②

신호기의 설치·폐지와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다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 도경찰청에, 시 ·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 · 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 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에도 시 · 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 · 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 · 해제 · 허용에 관한 사항

NoteBase

③

특별시·광역시의 시·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하여 교통 여건과 도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④ 특별시 · 광역시의 시 · 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등의 교통 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통합지침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NoteBase